시트(Sheet)방수 안전보건작업 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 이라한다.) 제13 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,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조치) 및 제236조(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)의 규정에 따라 시트(Sheet) 방수작업 과정에서의 안전작업을 도모하고 재해방지에 필요한 지침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구조체 방수를 위하여 시트(Sheet)를 붙이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아스팔트"라 함은 비파라핀계 석유 성분의 일부가 자연적으로 증발하거나 인공적으로 이를 증발(비등점이 낮은 것부터 차례로)시켜 얻어지는 고체, 또는 반고체의 점조성 물질을 말한다.
- (나) "아스팔트 프라이머"라 함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의 밀착을 좋게 하기 위한 도액(塗液) 으로 아스팔트에 용제(휘발유등)를 써서 희석 시킨 유 액을 말한다.